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56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윤준병 · 이정현 · 김 윤
임오경 · 이병진 · 곽상언
황정아 · 임미애 · 강준현
박홍배 · 박지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되,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과 형태·규모·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정부가 사용료 지급 없이 주한대사관 등의 용도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해당 외국정부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국가 간 상호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등).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국가 간 상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
2. 제34조제4항의 경우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국가 간 상호협정이 종료되는 기간 이내

제47조제1항 중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③ (생략) <u><신설></u>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국가 간 상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u><신설></u>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 : <u>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u> 2. 제34조제4항의 경우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국가 간 상호협정이 종료되는 기간 이내
<u><신설></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u>같은 조 제2항·제3항</u>,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③ (생략)	① ----- ----- ----- ----- ----- -----<u>같은 조</u> <u>제2항부터 제4항까지</u>----- -----. ②·③ (현행과 같음)
--	--